

## 韓國의 憲法裁判制度

權 寧 星\*

오늘의 主題인 憲法裁判의 活性化 方案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 자신 절묘한 묘방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의 오늘 발표의 주된 내용은 問題提起를 하고 이것을 討論過程에서 衆智를 모아 活性化方案을 함께 모색해 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憲法裁判制度의 장래에 관한 豫상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韓國의 憲法裁判制度는 活性化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쨌서 이런 비관적인 豫측을 하느냐 하면, 여러가지 각도에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 “憲法環境論”의 입장에서 憲法裁判의 活性化問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制度論이나 機能論의 입장에서 活性化方案을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관점에서 分析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憲法裁判制度는 活性化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든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憲法裁判制度가 活性化되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與件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오히려 장애요인, 저해요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憲法環境論입니다. 憲法裁判制度라는 것이 1988년 新憲法の 制定으로 비로소 신설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 것입니다. 다만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憲法裁判所가 일정한 범위의 憲法裁判權을 행사하게 된 것이 처음이라는 것이지, 지금까지 法院쪽이 행사해온 違憲法律審査라든가 行政訴訟에 있어서 機關訴訟이라든가 하는 것도 모두 넓은 의미에 있어서 憲法裁判制度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우리 憲法이 규정하고 있었던 彈劾制度라든가 違憲政黨解散制度도 모두가 憲法裁判制度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憲法裁判制度라는 것이 新憲法에 의하여 신설된 것이 아니라 종전에도 憲法裁判制度는 憲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活性化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法院과는 독립된 기관으로 憲法裁判所가 신설되고 여기에 憲法裁判權이 집중적으로 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新憲法에 있어서의 특색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를 참고삼아 회고해 보면 憲法裁判制度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活性化되지 못한 것은 憲法裁判制度 그 자체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憲法裁判權은 憲法裁判所가 아니라 法院이 憲法裁判權을 행사하였으므로 活性化되지 못했다는 오해가 일부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있습니다. 그러나 法院이 憲法裁判權을 행사하였으므로 실패했던 것은 아니고 憲法과 직접·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憲法을 둘러싸고 있는 環境이 그럴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軍部쿠데타에 의해서 집권한 환경하에서 權威主義 내지 파쇼체제가 지배하고 있는 憲法狀況下에서는 憲法이라고 하는 것이 그 規範力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통치, 폭력에 의한 통치가 횡행하는 그런 환경에서 法院인들 어떻게 憲法裁判權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憲法裁判所라는 제도를 가령, 維新憲法 당시에 또는 舊憲法 당시에 현행 憲法이 규정하는 바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憲法아래에서는 憲法裁判制度가 活性化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憲法裁判制度가 活性化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憲法을 둘러싸고 있는 環境과 직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회가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주화가 되면 헌법재판제도는 자연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憲法裁判制度를 통해서 국민들이 자신의 基本權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憲法裁判所에 대한 기대라든가 또는 憲法을 존중하려 하는 憲法尊重意識과 같은 憲法에 관한 국민의 憲法的意識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때는 憲法裁判制度는 그에 따라 活性化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憲法的 環境이 非民主的이라든가 憲法이나 憲法裁判制度에 대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憲法裁判制度는 그 자체만으로는 活性化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憲法裁判制度의 活性化方案은 일단 憲法環境論의 입장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드릴 말씀은 制度論과 機能論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憲法裁判制度를 活性化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本論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말씀으로서 憲法裁判制度를 우리가 活性化시키려고 노력할 경우에 活性化시킬 수 있는 여지가 과연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나 하면 憲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나 憲法學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憲法裁判制度를 活性化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도 制度 그 자체라든가 法的 裝置 그 자체가 憲法裁判制度가 活性化되기에 어렵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몸부림쳐본들 活性化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전 말씀드린 憲法環境論과 관련시켜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 憲法裁判所가 관장하게 될 審判事項에는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違憲法律審査制의 경우를 보면 舊憲法의 경우와는 달리 大法院의 不送付決定權이 삭제되었다든가 또 당사자도 違憲法律審判請求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든가 하는 두가지 점만 가지고 보면 違憲法律審査

제가 상당히 活性化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문제도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우리 憲法裁判所法을 보게 되면 제 41조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도 法院이 결정으로 그것을 인용하는 경우에만 憲法裁判所에 提請할 수 있게 되고 만일에 法院이 당사자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각한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불복하느냐 하면 憲法訴源을 규정한 法 제68조 제2항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정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있으므로 이 규정만 본다면 法院은 그 나름대로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나름대로 법원의 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憲法訴願에 관한 同法 제68조 제1항을 보면 法院의 裁判은 헌법소원사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각은 분명히 裁判의 일종입니다. 때문에 違憲法律 審査制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違憲法律 審査制라는 것은 法院의 태도여하에 따라서 완전히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말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違憲法律 審査制의 빈도가 얼마나 되겠느냐를 예상해 볼 때, 그 빈도가 國會가 憲法에 違反되는 法律을 제정하는 빈도에 정비례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憲法的 狀況이 어떠냐 하면, 與小野大이므로 과거처럼 執權與黨이 일방적으로 違憲的인 法律制定을 강행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合憲的인 法律의 制定可能性이 많아지고 違憲法律의 制定可能性은 희박합니다. 때문에 빈도의 면에서도 실제로 違憲法律 審査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制度面에서도 法院이 직권으로 憲法裁判所에 違憲法律의 審査를 청구하지 않는 한 違憲法律 審査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과 관련하여 結論的으로 말씀드리면 憲法裁判所에 대한 法院의 태도여하에 따라서, 즉 法院이 憲法裁判所에 얼마만큼 호감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違憲法律 審査制가 活性化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이 있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憲法改正論議過程에서 憲法裁判權을 독립된 기관인 憲法裁判所에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憲法裁判所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法院이 憲法裁判權을 과거처럼 담당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립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독립된 憲法裁判所를 설치해서 여기에다가 憲法裁判權을 부여하자는 見解이고, 또 하나는 英美의 방식을 본따서 法院이 憲法裁判權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見解가 제기되어,

두 見解가 팽팽히 맞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院內에서 제 1 당, 제 2 당의 위치를 점했던 정당이 작성한 憲法改正案을 보면 民正黨案에서는 憲法裁判所규정이 있었지만 民主黨案에서는 憲法裁判所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民正黨案은 違憲法律審査權을 法院이 행사하고 彈劾審判을 위해서는 별도의 彈劾審判所를 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정당간에도 한 쪽은 憲法裁判所를 설치하자고 하고 다른 쪽은 설치하지 말자는 대립된 見解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法院 쪽에서도 法院으로 하여금 憲法裁判權을 담당하게 하자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점만으로 보면 法院은 애초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憲法裁判所가 憲法裁判權을 행사하는 데 별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憲法裁判所法을 制定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문도 나오고 토론회도 있고 좌담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法務部가 주관한 “憲法裁判所法 制定에 관한 세미나”——이것은 法務部가 法務資料 제95집으로서 憲法裁判所制度에 관한 것으로 출간한 것이 있습니다.——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토론이 전개된 일이 있습니다. 그 토론내용을 보면 法院쪽에서 나오신 분들은 憲法訴願의 대상 중에서 法院의 判決은 제외하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본다면, 法院側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憲法裁判所가 설치되고 여기에 광범한 憲法裁判權을 부여하는 制度에 대해 별로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法院이 憲法裁判所의 憲法裁判權행사에 대해 호감을 갖지 않게 된다면 모처럼 法院이 직권으로 違憲法律審査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마저 금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法院이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해버리면 法院의 裁判은 憲法訴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違憲法律審査權은 발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특별히 지적하고 싶고, 다음으로는 違憲政黨解散審判부분인데 違憲政黨解散審判은 政府가 提訴를 하고 憲法裁判所가 審判을 하지만 사실상 違憲政黨를 解散시키는 審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民主化가 진척되면 어느정도 左傾的 政黨도 출현하고 이런 政黨에 대해서도 政治的 분위기가 상당히 관용하는 분위기로 형성될 것이고, 그리되면 굳이 特定政黨을 憲法裁判所의 審判을 통해서 違憲與否를 판가름하기 보다는 國民一般 또는 有權者의 판단에 맡기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違憲政黨解散問題도 별로 活性化되지 않을 듯합니다.

다음은 彈劾審判인데, 彈劾審判은 舊憲法의 어느 경우보다도 좀 더 活性化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現行憲法이 國務總理, 國務委員들에 대한 解任建議制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解任建議制가 과거에 있어서는 國會가 解任建議를 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大統領은 해임을 하여야 했으나 現行憲法에는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하여 대통령이 기속

을 당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때문에 現行憲法이 규정하는 解任建議는 정치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大統領은 아무런 法的인 구속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與小野大인 現國會의 세력분포에 비추어 볼 때 野黨이 憲法이나 法律을 위반하는 國務委員등을 해임시키려면 彈劾訴追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彈劾審判만은 舊憲法의 경우에 비해 다소 活性化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國家機關等 間의 權限爭議審判制인데, 이 경우는 현행 行政訴訟法上으로도 機關訴訟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法보다도 新憲法이 규정하는 權限爭議의 領域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行政法 영역에서의 그 수많은 判例 중에서 國家機關訴訟이 제기된 것은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엄격히 檢討해 보면 判例集에서 機關訴訟에 관한 判例로 分類하고 있는 事件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機關爭訟에 관한 判例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行政訴訟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機關訴訟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제기된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확정은 憲法이 國務會議에서 調整하라고 하고 있으므로 國務會議에서 調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國家機關間의 權限爭議는 역시 國務會議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고 또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中央集權主義의 傾向이 계속 지배한다고 하면 비록 地方自治團體가 불만이 있는 경우에도 地方自治團體가 自制하여 機關訴訟을 제기하는 일이 드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機關爭議審判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憲法訴願인데, 이 憲法訴願은 다섯가지 憲法審判制 중에서 違憲法律審査制와 더불어 國民의 基本權保障과 직결되고 있는 制度입니다. 이에 반하여 彈劾審判·政黨解散審判·機關爭議審判 등은 國民의 基本權保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審判은 아닙니다.

아무튼 違憲法律審判制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憲法裁判所法의 규정에 의해서 또 法院의 態度如何에 따라서 완전히 유명무실한 그런 것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만, 憲法訴願은 憲法裁判所法이 第68條 第1項에서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因하여 憲法上 保障된 基本權을 侵害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에 救濟節次가 있는 경우에는 그 節次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請求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注目해야 될 것은 憲法訴願審判 請求事由 중에서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憲法裁判所法을 立法할 당시에 法院의 裁判까지도 憲法訴願審判 請求事由로서 包含시킬 것이냐 제외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對立된 두 立場이 있었다고 하는 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法院의 裁判을 포함시키지 말자는 쪽의 立場이 憲法裁判所法에 反映되

고 말았습니다.

反映된 것은 좋으나,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래의 憲法訴願事項이 모조리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憲法이 규정하고 있는 憲法訴願審判制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解釋論을 통해서 살펴보면, 憲法訴願審判 請求事由로서 “公權力的 行使 또는 不行使”, 이것이 우선 문제가 되는데, 넓은 의미에서 公權力이라 한다면 立法權力的 行使는 法律의 制定이나 命令·規則의 制定 등의 形態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命令·規則의 경우에는 그것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大法院이 最終적으로 審判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命令이나 規則은 憲法訴願審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法律인데, 法律의 憲法違反, 이것은 違憲法律審判에 관한 규정이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만 그 效力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具體的 規範統制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基本權이 侵害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문제가 具體的인 事件으로 法院에 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審判을 請求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違憲法律審判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憲法訴願事項으로서의 公權力的 行使 중에 國會가 法律을 制定하는 경우는 포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解釋을 뒷받침해 주는 또 한가지 法規定으로서는 憲法訴願審判에 관한 規定 중 第75條 第4項을 보면 “憲法裁判所가 公權力的 不行使에 대한 憲法訴願을 認容하는 決定을 할 때는 被請求人은 決定趣旨에 따라 새로운 處分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憲法裁判所法 第68條에서 말하는 公權力的 行使라고 할 때의 公權力을 第75條 第4項의 경우에는 處分이라고 하여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 憲法이 抽象的 規範統制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具體的 規範統制만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가 憲法裁判所法 第75條 第4項이 여기서의 公權力的 行使를 암암리에 處分이라고 前提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西獨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法律에 대한 違憲與否를 具體的인 裁判與否에 관계없이 國民이 직접 憲法裁判所에 提訴할 수 있는 이러한 制度는 우리 憲法裁判所法의 解釋에 의하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公權力的 行使 또는 不行使 중에 法律의 制定權이나 命令·規則의 制定權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司法權력은 어떠냐 하면, 이것은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1項이 명문규정으로 法院의 裁判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司法作用은 憲法訴願의 對象이 되지 않습니다.

남은 문제는 결국 執行權力인데, 行政府가 하는 어떤 行政處分 또는 行政不作爲 이것만이 公權力的 행사 중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行政機關이 행하는 公權力的 行使 또는 不行使 이것은 行政訴訟法에서 남김없이 訴訟의 對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行政行爲의 概念을 확대해서 넓은 의미로 해석하느냐, 좁은 의미로 해석하느냐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公權力的

行使 또는 不行使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行政法에서도 좁은 의미에서의 行政行爲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의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는 현행 行政訴訟法의 규정에 의해서 그 救濟節次가 전부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1項을 보면 다른 法律에 救濟節次가 있는 경우에는 그 節次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行政機關이 하는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는 반드시 行政訴訟法에 규정된 救濟節次를 거친 후에 청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救濟節次인 行政訴訟를 다 거치다 보면 그 行政訴訟는 法院의 裁判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도 法院의 裁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憲法訴願의 對象이 될 수 있는 본질적 사항이 이 규정에 의하여 없어져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어떤 見解는 그렇지 않다 하는 見解로서, 行政訴訟으로서도 救濟받을 수 없는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가 있으며 그 예로서는 統治行爲, 權力的 事實行爲, 무슨 판자집을 撤去한다든가 하는 경우 또는 立法不作爲 또는 行政計劃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統治行爲나 行政計劃, 權力的 事實行爲 또는 立法不作爲 등 이런 것이 왜 行政訴訟法에 의한 行政訴訟의 對象이 되지 않느냐 하면 이러한 作用은 원래 司法的 審査의 對象이 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法院도 司法的 審査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法院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憲法裁判所는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성질상 그러한 權力的 事實行爲나 立法不作爲, 統治行爲 또는 行政計劃의 樹立같은 것은 司法的 審査의 對象으로 하기에 不適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司法審査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하여 圈外로 밀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法院에 의한 司法的 審査의 대상이 되기에 不適合한 것이라면 憲法裁判所도 그것을 司法的 審査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憲法訴願制度의 궁극적인 목표는 違憲의인 方法으로 行使된 國家의 公權力行使로 말미암아 憲法이 保障하는 基本權이 侵害된 경우에 그 侵害된 基本權을 최대한으로 救濟하자는 것이며, 그것이 憲法訴願制度의 본래의 精神입니다.

그래서 國會든 法院이든 行政府든 가리지 아니하고 國家機關의 公權力行使에 의해서 權利가 侵害되었을 경우에는 널리 憲法訴願을 請求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憲法訴願審判의 對象이 될 수 있는 본質의인 憲法訴願事項은 제외하여 버리고 엉뚱하게 統治行爲, 權力的 事實行爲, 立法不作爲 이런 非本質的 事項만을 憲法訴願審判事項으로 請求하라고 하는 것은 저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憲法이 모처럼 法院으로부터 獨立된 憲法裁判所를 설치하여 여기에 상당한 정도의 憲法裁判權을 賦與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憲法裁判制度가 장차 活性化될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制度的 裝置下에서는 둔한 제 머리로서 憲法裁判을 活性化시킬 수 있는 묘안은 도저히 발견해 내기가 어렵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관계상 요지만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